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3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19일  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정태,  
김제리, 김태수, 박기열,  
박기재, 박순규, 봉양순,  
송도호, 송아량, 유정희,  
이영실, 장상기, 최정순,  
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·개표사  
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  
별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 
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  
의 특별휴가를 부여함(안 24조 제18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·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⑰ (생 략)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⑰ (현행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<p>⑱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·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